

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

I 편의지원 대상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

II 신청 절차

증빙서류 제출
(제출 대상자인 경우)

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(원본)를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

※ 유형별 증빙서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
※ 편의지원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증빙서류와 함께 압축하여 등록

신청내역 및
증빙서류 검토

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진단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 검토

결과 통보

신청 내역 검토 결과 통보

※ 수험표 표기 또는 문자 등을 통해 통보

- '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'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'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편의지원 신청자의 편의지원 내역을 취합하여 필기시험 전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오니, 응시자는 응시 예정 시험 전에 채용 홈페이지 수험표 기재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편의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인재개발부(☎ 031-728-71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 지체장애인

1 상지지체 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[기존 1~3급]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 ○ 답안지 대필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증명서

2 상지지체 -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기존 4~6급]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증명서

3 하지지체 [기존 1~6급]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증명서

2 뇌병변장애인

1

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1~3급)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 ○ 답안지 대필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<p>장애인증명서</p>

2
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기존 4~6급)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<p>장애인증명서</p>

※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을 지원 받을 수 없으나, 예외적으로 손떨림, 마비, 뒤틀림 등으로 인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**의사진단서(소견서는 불인정) 검토** 후 인정여부 결정

3 시각장애인

1 필기시험시간 1.7배 연장이 가능한 경우

-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(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) 이하 동일이 0.04 이하인 사람 [기존 1~2급]
- ② 시각장애인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'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' 받은 사람 [기존 3급 2호]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시간 1.7배 연장 ○ 점자문제지 ○ 점자답안지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축소문제지 (확대독서기 사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82% (10pt, A4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시험시간 1.7배 연장, 점자문제지 신청 시】</p> <p>①에 해당하는 응시자: 양눈의 시력이 기재된 의사진단서(소견서는 불인정)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</p> <p>※ 2019.7.1. 이전에 시각장애 1~2급 판정을 받은 경우 제출 생략(별도 연락 시 제출)</p> <p>②에 해당하는 응시자: 양눈의 시력·시야 및 지원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(소견서는 불인정)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</p>

※ 축소문제지는 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가능

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
2

필기시험시간 1.5배 연장이 가능한 경우

-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(기존 3급 1.2회)
-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(기존 4급 2회)
- 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.20이하인 사람 (기존 4-5급 각 1회)
- ④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중 시험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(기존 6급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0이하인 사람 중 해당하는 경우)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<p>장애인증명서</p> <p>* 다만, ④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시험시간 1.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양눈의 시력 및 시간연장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(소견서는 불인정)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</p>

3

공통 지원사항이 가능한 경우: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3규격) 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* A3 표기형, A3 기입형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<p>장애인증명서</p>

※ ②,③의 경우 장애 유형(장애정도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4 청각장애인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화통역사 배치 ○ 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 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장애인증명서

5 기타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

1 기타 장애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 	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

※ 시험시간 연장 대상이 되는 장애유형·정도 외 중복 및 기타 장애유형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, 예외적으로 시각중복장애 { (예시)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, 편안 약시와 시야 20도 이내 } 나 안과질환 { (예시) 망막이상, 녹내장 } 등으로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(소견서 불인정) 검토 후 인정 → 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

2 임신부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높낮이 조절 책상 ○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(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,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)

3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 	의사진단서

4 일시적 신체장애 / 특수 및 중복장애

지원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상·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 	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(검토 후 별도 안내)

참고 1

(해당 응시자)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-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 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 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**로 증빙 가능

□ 발급일자: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**
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유효 진단서 발급일
2022년 12월 7일	2020년 12월 8일 이후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**반드시 포함**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- ① (장애)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)
- ② (장애로 인한)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 ⇒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	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기 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	

*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(소견서 불인정)

참고 2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요약)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(각부)		
지체 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기존 4~6급	
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기존 1~6급	
뇌병변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의사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	기존 4~6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
시각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	의사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	기존 1~2급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	기존 3급 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증명서	기존 3급 1,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	기존 4, 5급 1호
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		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기존 5급 2호, 6급	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	검토 후 안내
	임신부		· 낯빛이조절책상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	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	의사 진단서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